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9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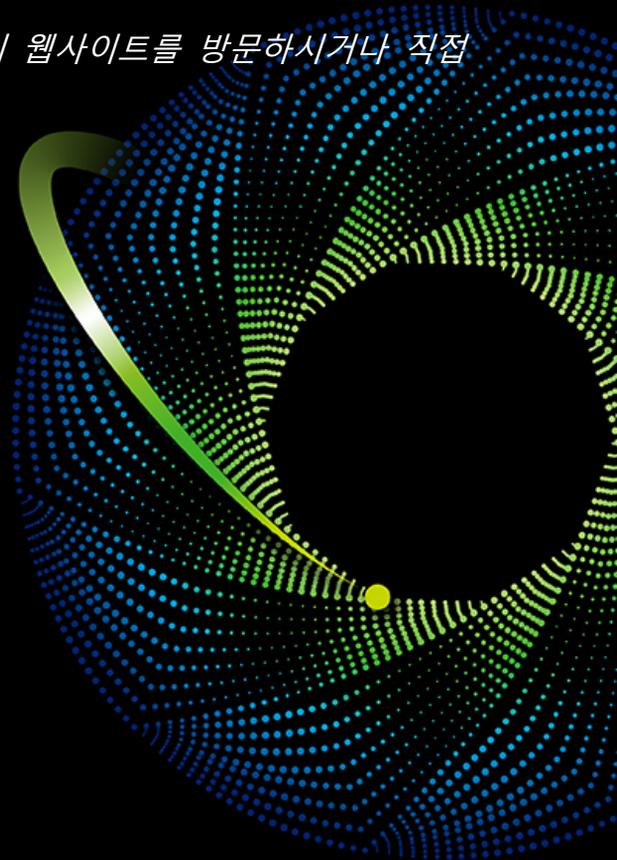
딜로이트 베트남 “2023 ITR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택스 어워즈”

딜로이트 베트남이 2023년 9월 27일에 런던에서 개최된 구제조세전문지(ITR)가 선정하는 2023 아시아 태평양 택스 어워즈에서 “올해의 베트남 세무자문사” 및 “올해의 베트남 이전가격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딜로이트 베트남이 “올해의 베트남 세무자문사”로 선정된 것은 저희의 노력과 탁월한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딜로이트는 항상 고객님들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우수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무 환경에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입니다.

저희의 뛰어난 성과는 고객님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객님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파트너로서 선정된 것에 깊은 영광을 느끼고 있으며, 세무 분야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무 요구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딜로이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직접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CIT 인센티브를 받은 과세기간 결정
-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
-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개인소득세 ("PIT")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지점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 유가증권 상속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외국 해운사에 직접 지불한 운임에 대한 FCWT
-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객실 예약 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FCWT 의무

간접세 ("VAT")

- 수출가공업체 ("EPE")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VAT 정책
- 공급자는 부적절한 품질로 인해 구매자에 의해 반품된 물품에 대해 조정 또는 교체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함
-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및 관세

-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참고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조건
- 수입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에 대한 VAT
- 화학 제품 및 기본화학물질에 대한 VAT
- 특수 전자장비에 대한 수입 VAT
- 내국 수입 절차 수행 기한
- EV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 수출가공업체 ("EPE")이 국내 시장에 상품을 판매 시 관세 서류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 문서

CIT 인센티브를 받은 과세기간 결정

현행 CIT 규정에 따르면 확장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세금면제 및 감면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는 가동 시작하며, 수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된다. 첫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인센티브를 선택한 옵션이 신규 투자사업에만 적용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8월 02일 제 3277/TCT-CS 호 OL)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에 대한 CIT 인센티브

소프트웨어 제조 기업은 소프트웨어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가 없으면 시규투자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하노이세무국의 2023년 7월 19일 제 52180/CTHN-TTHT호 OL)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현재 CIT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거나 CIT 인센티브를 완전히 적용한 기업이 하이테크 프로젝트 확인서를 부여 받으면, 그 기업의 잔여 인센티브 적용기간이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기간에서 최초 CIT 인센티브를 (세율 및 면제 또는 감면) 적용했던 기간을 공제하여 결정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7월 12일 제 2879/TCT-CS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수출가공업체 (“EPE) 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VAT 정책

EPE에 판매되는 상품은 규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VAT0%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8월 09일 제3435/TCT-CS호 OL)

공급자는 부적절한 품질로 인해 구매자에 의해 반품된 물품에 대해 조정 또는 교체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함

구매자가 부적절한 품질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공급자는 물품 반품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최초 인보이스를 조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공급자가 물품 반품 인보이스상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4.1조 및 제19.2.b조에 따라 물품 반품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8월 15일 제19553/CTBDU-TTHT호 OL)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시범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이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징수하지 않아 상법규정에 따라 판촉활동에 수행하는 경우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한다. 공급자의 인보이스상 상품의 명칭 및 수량, 판촉 또는 견본상품등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VAT 목적의 과세가격은 (0) 영으로 확정된다.

시범목적의 무료 상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이 상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가 일반적인 판매와 동일하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VAT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가 수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샘플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VAT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8월 29일 제 20792/CTBDU-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지점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종속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회사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본사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규정에 따라 임금소득에서 PIT 공제;
- 회사 본사를 관리하는 세무국에 PIT 신고서 (제05/KK-TNCN호 양식) 및 다른 지방에 PIT 할당표 (제05-1/PBT-KK-TNCN호 양식)를 제출;
- 직원이 근무하는 각 지방의 국가 예산에 PIT 납부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8월 15일 제 59245/CTHN-TTHT 호 OL)

유가증권 상속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비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유가증권을 상속받아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세무국에 직접 세금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 대리인의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대리인의 세금 코드 및 계약 번호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8월 21일 제 No. 61194/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외국 해운사에 직접 지불한 운임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가는 화물 운임을 외국 해운사에 **직접 지불할** 경우, (외국 해운사는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음) 베트남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외국 해운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물류 대리점이 **외국 해운사에 운임을 직접 지불하지 않으므로** 외국 해운사를 대신하여 FCWT 신고 및 납부할 책임이 없다.

(Quang Nam 세무국의 2023년 8월 31일 제/ 6393/CTQNA-TTHT 호 OL)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온라인 객실 예약 분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FCWT 의무

베트남에 숙박 시설이 숙박고객한테서 결제를 받은 후에 외국인 계약자인 숙박예약업체에게 중간 수수료를 결제할 경우, 숙박 시설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외국인 계약자가 고객한테서 객실 임대료를 직접 받은 후에 중간수수료를 공제하여 숙박시설에게 객실 임대료를 송금할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외국인 계약자간에 협의가 없어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 여전히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책임이 있다.

(Ba Ria - Vung Tau 세무국의 제/ 5934/CTBRV-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의 외부창고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조건

2023년 8월 2일에 관세총국은 수출가공기업("EPE")의 외부창고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조건에 관한 제 4040/TCHQ-GSQL호 OL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EPE가 수출 가공 활동을 위한 물품을 수출가공구역 내에 보관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경제지역외에 공간을 임대할 수 있지만 아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울타리로 외부와 분리되어 있다; 및
 - ✓ 출입구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며, 감시 카메라의 녹화물은 관할 관세당국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EPE에 임대하는 창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보관된 EPE들의 물품간에 칸막이가 필요없다:

- ✓ 외부 영역과 분리된 단단한 울타리가 있다
- ✓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EPE의 물품만 포함한다. 창고에 Non-EPE의 물품이 있을 경우 울타리로 분리되어야 한다.
- ✓ 창고에 보관된 EPE의 물품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하루종일 24 시간 작동되는 감시카메라로 감시되어야 하고 세관조사 및 감독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창고에 입고, 출고 및 보관된 물품에 대한 각 EPE의 관리 제도가 있으며, 관세당국의 요청 받은 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세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2일 제 4040/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입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에 대한 VAT

2023년 8월 16일에 관세총국은 2023년 6월 30일 제 44/2023/ND-CP 호 시행령에 따라 수입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에 대한 VAT 적용에 관한 제 4259/TCHQ-TXNK 호 OL를 발표하였다 ("제44호 시행령").

따라서 수입 물품이 금속 및 조립금속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44호 시행령 제1조 1항에 규정에 따른 VAT 감면 대상이 아니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16일 제4259/TCHQ-TXNK호 OL)

화학 제품 및 기본화학물질에 대한 VAT

2023년 8월 16일에 관세총국은 제44호 시행령에 따라 수입 화학 제품 및 기본화학물질에 대한 VAT 적용에 관한 제 4260/TCHQ-TXNK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수입 화학 제품은 제44호 시행령 규정에 따른 VAT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수입 물품이 기본 화학물질일 경우 제44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16일 제 4260/TCHQ-TXNK호 OL)

특수 전자장비에 대한 수입 VAT

2023년 8월 16일에 관세총국은 제44호 시행령에 따라 수입 특수 전자장비에 대한 VAT 적용에 관한 제4262/TCHQ-TXNK호 OL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 5월 3일 제71/2007/ND-CP호 시행령 및 2013년 4월 8일 제 09/2013/TT-BTTTT호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 전자장비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다:

"특수 전자장비란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자장비를 의미한다. 특수 전자장비에는 측정, 자동화, 의료, 생물학 및 기타 전문 분야의 장비를 포함한다."

따라서 수입 물품이 특수 전자장비로 확인되는 경우 제44호 시행령에 첨부된 IV조, B항, 부록 III의 목록에 해당되며 VAT 10%가 적용된다.

VAT 신고를 위해 수입 특수 전자장비의 분류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은 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도록 안내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16일 제 4262/TCHQ-TXNK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내국 수입 절차 수행 기한

2023년 8월 18일에 관세총국은 내국수입 절차 수행 기한을 안내하는 제4350/TCHQ-GSQL호 OL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내국 수출 물품의 가공 및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고려 받기 위해 "내국 수출 물품의 통관일로 부터 15일"은 내국 수출자가 내국 수입 절차 완료에 대한 정보를 세관당국에 통보하는 기한이다
- "수출 물품 통관일로 부터 근무일 15일"은 내국 수입자가 통관절차를 완료하는 기한이다.

(관세총국의 2023년 8월 18일
제4350/TCHQ-GSQL호 OL)

EV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2023년 8월 24일에 세관 감독통제국은 EV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제1354/GSQL-GQ4호 OL를 발표하였다.

유럽 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관당국은 수출자의 REX 번호와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출자의 물품목록을 볼 수 있다 (생사업체가 이정보를 유럽 연합 웹사이트에 공개를 동의하는 경우).

물품이 웹사이트에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관세당국이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없고 수출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인증하는 REX 번호 코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다.

(관세 감독통제국의 2023년 8월 24일
제1354/TCHQ-QG4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 ("EPE")이 국내 시장에 상품을 판매 시 관세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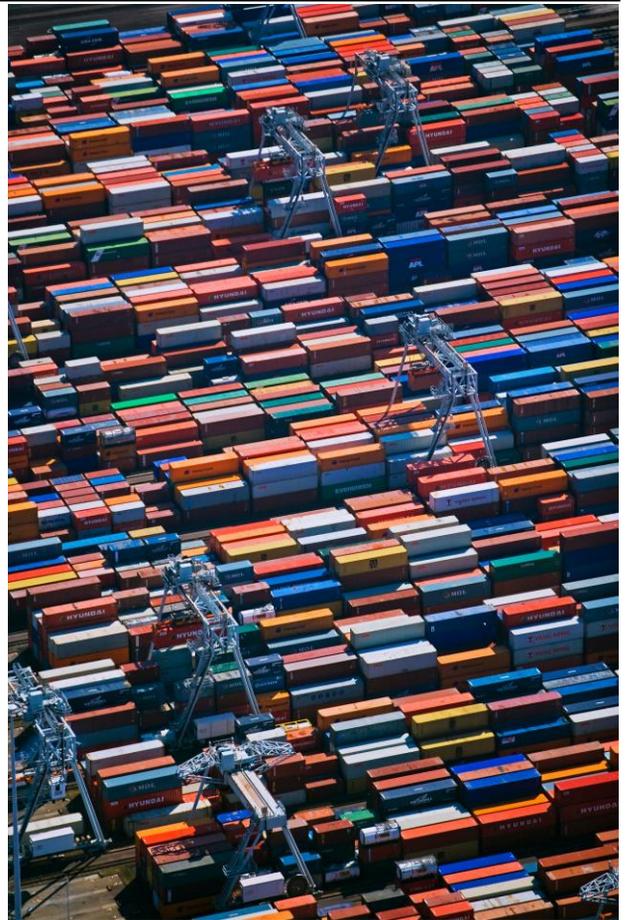
2023년 8월 30일에 법무부는 EPE가 국내 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관세서류에 관한 제524/PCT호 OL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과 EPE간에 또는 비관세 지역에 위치한 기업간에 상품을 거래할 경우 관세 신고자는 상업 계산서 (Commercial invoice) 대신 VAT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산서 발행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재무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으므로 계산서와 관련 사항은 제123/2020/ND-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따라서 법무부는 국내 기업과 EPE간에 또는 비관세 지역에 위치한 기업간에 체결된 각 계약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근거하여 실제 현황 및 법규 규정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관세총국에 요청한다.

(법무부의 2023년 8월 30일 제524/PC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